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입주자모집 안내문

Ⅰ 입주자 모집

○ 사업지역별로 선정된 운영기관에서는 해당주택의 호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본 입주자 모집 안내문에 열거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입주자 모집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상시**

○ 접수장소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61, 4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제출서류 (안내문 Ⅲ-1, 2 표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1인당 1부씩 제출, 사본은 각 운영기관에서 보관

○ 경쟁 발생 시, 출자금6구좌 이상 납입여부, 교육참여횟수 등을 객관지표화하여 입주순위를 차례대로 부여하려 합니다. 다만, 대체로 경쟁이 없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향후 일정

□ 입주대상자 자격조회

○ 주 1회 서류 취합 후, L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자산·주택 소유 여부를 자격 조회 **(약 4~5주 소요)**

○ 자격조회 소요 시간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추후 재단에서 개별 공지 예정

○ 자격조회 통과 안내 문자를 받은 지원자는 운영기관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전에 보증금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계좌**로 송금해야함

○ 입주대상자의 자격조건 중 자동차 관련 차량가액 산출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로그인 → 공시·조회 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 위 차량기준가액은 입주대상자 명의의 차량 특성을 반영한 금액으로 실제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3. 입주자 입주 안내

○ **입주 기간 : '17. 3. 16 완료 (3.16 이후 선착순 입주 마감)**

○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은 불법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거주 중 입주자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2년)동안에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갱신계약 시 변경된 입주자 자격에 따라 갱신계약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과의 입주계약서류는 주거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합니다.

Ⅱ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취업준비생)

□ 공고일(2016.12.20.)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및 **복학**예정인 자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의미함

①-㉯ **(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닐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인 이하	3,371,660원 이하
4인	3,775,200원 이하
5인 이상	3,832,780원 이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④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부천시** 주택 **연접지역** : **광명시, 서울시, 시흥시, 인천시**
수원시 주택 **연접지역** :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주택 **연접지역** :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오산시 주택 **연접지역** : **평택시, 화성시**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과거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 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 공고일(2016.12.20.)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①-㉮ **(사회초년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①-㉯ **(재취업준비생)**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사회초년생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3,371,660원) 이하일 것**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로 확인함

※ **부천시** 주택 **연접지역** : **광명시, 서울시, 시흥시, 인천시**
수원시 주택 **연접지역** :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주택 **연접지역** :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오산시 주택 **연접지역** : **평택시, 화성시**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해당 세대**는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17.3.31.) 전까지** 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Ⅲ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6.12.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불가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계층"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 신청희망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2.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대학 주민센터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 . 사회초년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퇴직증명서** (재직증명 및 퇴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해당 직장 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학교 가입은행

Ⅲ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 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Ⅳ 유의사항

○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 갱신계약 자격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 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하나,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대학생 계층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임대차계약일 기준 2년 후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여 5%내외 인상 예정입니다.

○ 갱신계약 자산 기준 변경

16.12.30 행복주택 갱신계약 자산 기준 변경에 따라 행복주택 기준을 준용하는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의 갱신계약 자산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입니다.

입주자 유형	자산기준	
	현행	변경
대학생 (취업준비생)	(부동산) 1.26억 (자동차) 0.25억	(총자산) 0.75억원 (자동차) 미소유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부동산) 2.16억 (자동차) 0.28억	(총자산) 1.87억원 (자동차) 0.25억원
공통	금융자산은 비적용하고, 부동산, 자동차 각각 적용	부동산, 자동차외에 **금융자산을 추가**, 총자산(부동산+자동사+금융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적용

* 변경된 자산 기준금액은 '16년도 기준으로 통계청 등의 발표에 따라 매년 자산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행복주택 누리집에서 입주자격 자격진단 가능(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 행복주택 누리집 : http://www.molit.go.kr/happyhouse

V 문의처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070-4148-9120

또는 이메일 minsnail.housingcoop@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주거복지재단: 031-738-4393 'LH사회적주택' 입주자격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사회적주택 입학 · 복학예정 확인서

본인은 사회적주택에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공고일 현재, 다음 학기에 해당학교 입학·복학 예정이며, 입학·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주택 입주가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명	복학예정시기	주민번호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